

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8. 30 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5. 9. 20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5. 9. 23(금) 제12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 9. 20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·공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가격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가액을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일부개정
- 11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다음에 11-1 주택가격에 관한 확인란을 신설하고,
-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 가액을 1통당 각각 400원으로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본 조례안은 2005년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서 평가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납세자들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연도별로 1주택당 발급수수료를 400원씩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나. 수수료를 4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, 과세증명 등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원이 모두 400원임을 감안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
- 다.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 제출 등은 없었고
- 라. 제명 또한 법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되었고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 구성이나 조문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.